

2025년 제2차 오디오북 제작 지원 사업 공고

2025년 제2차 오디오북 제작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출판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1. 사업 개요

- 사업명 : 오디오북 제작 지원
- 사업목적 : 고품질 오디오 콘텐츠 공급을 통한 시장 활성화 및 수요 증대
- 사업기간 : 2025. 1. ~ 12.

2. 지원 개요

- 지원대상 : 출간 도서 및 미출간 원고를 오디오북으로 제작·유통하고자 하는 출판사
- 지원형식 : MP3, WAV
- 지원규모 : 총 290종 내외(연 2회 접수, 회차당 145종 내외 선정)
- 지원 내용

구분	내용									
지원 사항	① 연 2회 추진, 1종당 5백만 원 이내 제작 실비 지원									
	② 출판사별 회차당 최대 3종 신청 가능, 최대 3종 선정 가능									
	<table border="1"><thead><tr><th>지원 가능 항목</th><th>지원 불가 항목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- 내레이터(성우)비 ※ 사람이 직접 녹음하여야 함</td><td>- AI 음성 합성 기술(AI 성우 등)을 사용하여 제작한 콘텐츠의 제작비용 일체</td></tr><tr><td>- 스튜디오 대여비</td><td>-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임직원·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(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)</td></tr><tr><td>- 엔지니어 녹음, 마스터링 및 편집비</td><td>- 내부 인건비 및 경상비</td></tr><tr><td>- 검수비</td><td>- 저자 인세 및 저작권 사용료</td></tr></tbody></table>	지원 가능 항목	지원 불가 항목	- 내레이터(성우)비 ※ 사람이 직접 녹음하여야 함	- AI 음성 합성 기술(AI 성우 등)을 사용하여 제작한 콘텐츠의 제작비용 일체	- 스튜디오 대여비	-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임직원·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(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)	- 엔지니어 녹음, 마스터링 및 편집비	- 내부 인건비 및 경상비	- 검수비
지원 가능 항목	지원 불가 항목									
- 내레이터(성우)비 ※ 사람이 직접 녹음하여야 함	- AI 음성 합성 기술(AI 성우 등)을 사용하여 제작한 콘텐츠의 제작비용 일체									
- 스튜디오 대여비	-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임직원·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(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)									
- 엔지니어 녹음, 마스터링 및 편집비	- 내부 인건비 및 경상비									
- 검수비	- 저자 인세 및 저작권 사용료									

구분	내용
지원 조건	<p>① 신청 도서 : 출간 도서(종이책·전자책) 및 미출간 원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출간 도서 :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“간행물”로서 ISBN을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p>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제2조(정의) 3. “간행물”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, 발행인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.</p> <p>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시행령 제3조(간행물의 기록 사항)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제2조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</p> <p>1. 출판사 2. 「도서관법」 제23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. 다만,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로 같음할 수 있다.</p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오디오북 ISBN이 있는 콘텐츠는 오디오북으로 기제작 또는 기유통 중인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 및 선정 제외함 ※ 전자책바로센터에서 신청 도서(종이책·전자책)의 ISBN 유효성을 검사하며, 서지정보의 “제본형태”가 미기재돼 있을 시 검사에 통과하지 못함. 이 경우 서지정보를 정정한 뒤 다시 신청하여야 함 ※ 국립중앙도서관 “ISBN·ISSN·납본 시스템”을 통한 ISBN 발급 및 서지정보 정정은 신청 후 업무일 기준 3일 이내 처리, 사업 접수 마감일을 고려하여 준비 요함 ▶ 미출간 원고 : 완결성을 갖춘 원고(완고 기준) ※ 출간 예정이라더라도 종이책·전자책 ISBN을 발급한 콘텐츠는 출간 도서로 판단함 <p>② 저작권 확보 : 저작권자(저자·역자) 및 실연자(성우 등)와의 저작권, BGM 및 효과음 등 사용에 대한 권리 및 저작권에 대한 모든 이용 허락을 확보하여야 함</p> <p>③ 제작 기준 및 품질 준수 : 오디오북 품질 관리 및 소비자 사용 경험 향상을 위하여 오디오북을 유통하고자 하는 유통사의 품질 기준을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선정사가 직접 유통사별 오디오북 파일 등록 필수 및 권장 기준 확인 필요 <p>④ 지원 문구 녹음 및 명기 : 오디오북 파일 및 유통 화면에 지원 사실을 밝혀야 함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 text-align: center;"> <p>이 콘텐츠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.</p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⑤ 제작비 증빙 : 제작비에 관한 증빙서류(견적서, 세금계산서, 이체확인증, 원천징수 영수증 등)를 제출하여야 함 ⑥ 오디오북 유통 : 협약 기간 내 유통하여야 하며, 유통증명서에 거래 중인 유통사와 해당 도서 ISBN을 기입하여야 함 ⑦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: 제작 후 오디오북 ISBN을 발급받아 반드시 납본하여야 함 ※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침에 의거 A.I. 등을 활용한 콘텐츠, 책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강연, 공연, 외국어 학습을 위한 회화, 성인용 외설 콘텐츠는 납본 불가 ⑧ 국립장애인도서관 기증 : 권고사항이며, 기증 의사 밝힐 시 반드시 기증하여야 함

구분	내용
	⑨ 보완 의무 : 진흥원 검수 결과에 따라 제작물 및 서류를 보완·제작하여야 하며, 제작 완료 기한 내 미보완 시 지원금 지급 불가

3. 신청 및 선정 개요

구분	내용						
신청 방법	<p>- 전자책바로센터(baro.kpipa.or.kr) ▶ 로그인 ▶ ‘오디오북 신청’</p> <p>※ 전자책바로센터(‘24년 개편) 가입 필수, 허위 번호 가입 및 중복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출판사당 1개의 계정만 생성 가능</p> <p>※ 신청 후 확인 방법 : 로그인 ▶ 우측 상단 ‘마이페이지’ ▶ 신청현황</p> <p>※ 출판유통통합전산망(bnk.kpipa.or.kr) 가입 필수, 신청 도서 메타데이터 등록 권고</p> <p>※ 메타데이터 등록 후 전자책바로센터에서 신청 도서 정보 자동 불러오기 가능</p>						
접수 기간	2025. 5. 20.(화) 10시부터 ~ 5. 26.(일) 16시까지 [7일간]						
제출 서류	<p>① 확인서 1부</p> <p>※ 진흥원에서 양식 제공, 하기 표를 참고하여 신청 도서에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국내서</td> <td> <p>제출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정부 고시 표준계약 체결 확인서 1부 ※ 배타적발행권 설정 및 표준계약을 준수하여 체결했음을 확인하는 서류 ※ 모든 저작권자(저자)의 동의를 얻은 후 제출 <p>예외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저작권 관계 확인서 1부 : 저작권자(저자)와 출판권자(출판사 대표)가 동일하여 계약서가 없는 경우 제출 ▪ 저작권 소멸 도서 확인서 1부 : 「저작권법」 제39조(보호기간의 원칙) 및 동법 제40조(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)에 해당 시 제출 </td> </tr> <tr> <td>외서 (번역서)</td> <td> <p>제출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외서 확인서 1부 ※ 신청 도서가 외서임을 확인하는 서류 ※ 모든 저작권자(저자)의 동의를 얻은 후 제출 ▪ 정부 고시 표준계약 체결 확인서 1부 ※ 배타적발행권 설정 및 표준계약을 준수하여 체결했음을 확인하는 서류 ※ 모든 저작권자(저자, 역자)의 동의를 얻은 후 제출 <p>예외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저작권 관계 확인서 1부 : 저작권자(저자, 역자)와 출판권자(출판사 대표)가 동일하여 계약서가 없는 경우 제출 ▪ 저작권 소멸 도서 확인서 1부 : 「저작권법」 제39조(보호기간의 원칙) 및 동법 제40조(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)에 해당 시 제출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내용	국내서	<p>제출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정부 고시 표준계약 체결 확인서 1부 ※ 배타적발행권 설정 및 표준계약을 준수하여 체결했음을 확인하는 서류 ※ 모든 저작권자(저자)의 동의를 얻은 후 제출 <p>예외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저작권 관계 확인서 1부 : 저작권자(저자)와 출판권자(출판사 대표)가 동일하여 계약서가 없는 경우 제출 ▪ 저작권 소멸 도서 확인서 1부 : 「저작권법」 제39조(보호기간의 원칙) 및 동법 제40조(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)에 해당 시 제출 	외서 (번역서)	<p>제출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외서 확인서 1부 ※ 신청 도서가 외서임을 확인하는 서류 ※ 모든 저작권자(저자)의 동의를 얻은 후 제출 ▪ 정부 고시 표준계약 체결 확인서 1부 ※ 배타적발행권 설정 및 표준계약을 준수하여 체결했음을 확인하는 서류 ※ 모든 저작권자(저자, 역자)의 동의를 얻은 후 제출 <p>예외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저작권 관계 확인서 1부 : 저작권자(저자, 역자)와 출판권자(출판사 대표)가 동일하여 계약서가 없는 경우 제출 ▪ 저작권 소멸 도서 확인서 1부 : 「저작권법」 제39조(보호기간의 원칙) 및 동법 제40조(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)에 해당 시 제출
구분	내용						
국내서	<p>제출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정부 고시 표준계약 체결 확인서 1부 ※ 배타적발행권 설정 및 표준계약을 준수하여 체결했음을 확인하는 서류 ※ 모든 저작권자(저자)의 동의를 얻은 후 제출 <p>예외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저작권 관계 확인서 1부 : 저작권자(저자)와 출판권자(출판사 대표)가 동일하여 계약서가 없는 경우 제출 ▪ 저작권 소멸 도서 확인서 1부 : 「저작권법」 제39조(보호기간의 원칙) 및 동법 제40조(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)에 해당 시 제출 						
외서 (번역서)	<p>제출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외서 확인서 1부 ※ 신청 도서가 외서임을 확인하는 서류 ※ 모든 저작권자(저자)의 동의를 얻은 후 제출 ▪ 정부 고시 표준계약 체결 확인서 1부 ※ 배타적발행권 설정 및 표준계약을 준수하여 체결했음을 확인하는 서류 ※ 모든 저작권자(저자, 역자)의 동의를 얻은 후 제출 <p>예외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저작권 관계 확인서 1부 : 저작권자(저자, 역자)와 출판권자(출판사 대표)가 동일하여 계약서가 없는 경우 제출 ▪ 저작권 소멸 도서 확인서 1부 : 「저작권법」 제39조(보호기간의 원칙) 및 동법 제40조(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)에 해당 시 제출 						

구분	내용
	<p>제출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정부 고시 표준계약 체결 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※ 저작권 보호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자(망인)와의 계약서 기간 만료 여부 확인 및 상속자의 동의를 얻은 후 제출 <p>참고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계약 기간 만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상속자와 출판사의 표준계약 체결 확인서 1부 ※ 저작권자란에 망인명, 상속자명 기입 * 망인과 상속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(개인정보 불러 처리) ▪ 계약 기간 미만료 : 망인과 출판사의 표준계약 체결 확인서 1부
참고 (저작권법 일부 발췌)	<p>제39조(보호기간의 원칙)①저작권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.</p> <p>②공동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.</p> <p>제40조(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)①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. 다만,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권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.</p> <p>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.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 등록이 있는 경우 <p>제44조(보호기간의 기산)이 관에 규정된 저작권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.</p> <p>제53조(저작권의 등록)①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저작자의 실명·이명(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)·국적·주소 또는 거소 2. 저작물의 제호·종류·창작연월일 3.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·공표연월일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<p>②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 심사 원고 1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PDF로 제출, '앞표지 + 목차 + 신청 도서의 총 원고(본문) 분량의 10%'를 하나의 파일*로 구성 * 온라인 서점(유통사)의 '미리보기' 제공 형태에 준함 ※ 총 원고(본문) 분량의 10% 이내에서 신청 도서의 핵심 내용을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발췌해 제출할 수 있으며, 발췌 위치(본문 앞·중·뒤)에 대한 제한은 없음

구분	내용						
	※ 앞표지, 목차는 총 원고(본문) 분량의 10%에 포함되지 않음 ※ 출간 도서의 경우 앞표지와 목차 필수 포함, 미포함 시 심사 제외함 ※ 미출간 원고의 경우 앞표지 생략 가능 ※ 총 원고(본문) 분량의 10% 초과분은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						
심사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심사위원회 구성 : 전문 심사위원 5인 이내로 구성 - 심사 방법 : 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신청서 및 원고로 평가 - 심사 기준(안)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70 658 1362 882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0%;">구분</th> <th>핵심사항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작품 우수성(50)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콘텐츠 내용의 질적 수준 - 유사 콘텐츠와의 차별성 및 경쟁력 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획성(50)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획안의 참신성 및 흥미성 - 오디오북에 특화된 기획 반영 여부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핵심사항	작품 우수성(5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콘텐츠 내용의 질적 수준 - 유사 콘텐츠와의 차별성 및 경쟁력 	기획성(5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획안의 참신성 및 흥미성 - 오디오북에 특화된 기획 반영 여부
구분	핵심사항						
작품 우수성(5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콘텐츠 내용의 질적 수준 - 유사 콘텐츠와의 차별성 및 경쟁력 						
기획성(5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획안의 참신성 및 흥미성 - 오디오북에 특화된 기획 반영 여부 						
심사·선정 제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본 사업에 이미 선정되었거나 선정 결과 공고일 기준 오디오북 ISBN가 있거나 오디오북으로 기 제작·유통되고 있는 콘텐츠 ② 접수 마감 시간 기준 출판유통통합전산망(bnk.kpipa.or.kr)에 미가입 상태이거나 가입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출판사의 콘텐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은 국내 출판유통구조의 투명화와 선진화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으로 출판물의 생산·유통·판매 과정을 실시간으로 정보화함으로써 분산돼 있는 출판유통정보를 통합관리합니다.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메타데이터를 한 번 입력하면 연계기관 및 모든 서점의 시스템에 신속하게 전달됩니다. ③ 저작권자와의 저작권·배타적발행권 설정 계약이 명확하지 않은 콘텐츠 ④ 미완결 콘텐츠 또는 단일 콘텐츠로서 완결성이 없는 시리즈 중 일부 콘텐츠, 단행본의 일부 챕터 또는 요약본 ⑤ 텍스트 없이 전체 그림만으로 구성된 콘텐츠, 학습 교재류, 정기간행물, 학회지 등 ⑥ 출판사에서 성우·제작사 측에 오디오북 제작비를 초기에 지불하지 않고, 비용 절감을 이유로 차후에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 ⑦ 관리의 편의, 마케팅의 차별성 등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특정 업체 및 유통사에 오디오북을 독점 공급하거나, 전송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여 작가의 권리 침해 여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⑧ 제출 서류에 사실이 아닌 정보를 기입하는 경우, 누락 또는 미비한 경우 ⑨ '2025년 전자출판물 제작 지원 사업(공고 : 4.10.~4.25.)'과 중복 신청한 콘텐츠 ⑩ 제작 완료 일정에 맞지 않는 경우 						

4. 추진 일정(안)

사업 추진 내용	기간
접수	5. 20.(화) 10시부터 ~ 5. 26.(월) 16시까지 [7일]
심사위원회 개최	6. 2.(월) ~ 7. 8.(화)
선정 결과 발표	7. 9.(수)
협약 체결	7월 중
오디오북 제작 및 자체 검수	8~10월 중
제작·유통·납본 완료 및 증빙서류 제출	10~11월 중
제작 지원금 정산 및 지급	12월 중

※ 상기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

5. 유의사항

- 본 사업 신청 및 수행에 있어 사업 공고 및 안내 내용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출판사에 있습니다.
- 본 사업 신청에 앞서 전자책바로센터와 출판유통통합전산망 가입은 필수입니다.
- 본 사업의 신청 콘텐츠는 저작권 분쟁 사항이 없어야 하며,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해당 출판사에 있습니다.
- 제출 서류 내 날인 또는 서명은 도장, 전자 도장, 자필 서명, 전자 서명(서명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로그 등이 확인되어야 함)만 허용합니다.
 ※ 한글(hwp), PDF 등 파일 내 글꼴, 그리기 개체 등으로 서명 시 미제출로 간주
- 선정작에 대해 제작사 및 실연자와 계약 시,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(오디오북 제작계약서 및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계약서)를 사용한 후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종당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, 5백만 원 초과 시 발생하는 제작비의 잔여금은 자부담하여야 합니다.
- 지원금은 제작·납본·유통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 완료 후 진흥원의 검수 결과 이상 없을 시 지급되며, 지원금의 유용 및 증빙자료 제출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보완 및 제출을 약속하고 지원금을 선지급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.

- 선정 취소 및 선정 후 사업 수행 불가 도서는 다음 차시 및 차년도 본 사업의 심사 및 선정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.
- 협약 체결 및 제작 완료에 수반되는 서류 등을 포함하여 본 사업의 이행 관련으로 진흥원의 요청이 있을 시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 해제 및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해당 출판사에 있습니다.
 - 상기 지원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
 - 상기 심사·선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 -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
 - 표절 및 복제 등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
 - 제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하여 제출하는 경우
 - 기타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명백한 선정 취소 사유로 판단될 경우

6. 문의

- 미래산업팀(063-219-2752, ebookbaro4@kpipa.or.kr)

2025. 5. 12.

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